

2024 세법학 II .zip 추록

2024년 5월 30일 발행
정정운 · 손재호 | 상경사

- 이 추록이 필요한 책 : 『세법학 II .zip』 (정정운 · 손재호) 제6판
- 주요 내용 : • 출간 후 발견된 몇 가지 오류수정
• 출간 후 개정된 법령 반영

I . 오류수정사항

P	행	증전의 내용	고침
112	下 14	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	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
	下 4		
331	上 2	… 순자산시가의 <u>120%</u> 이상일 것	… 순자산시가*의 <u>130%</u> 이상일 것
	上 13	… 순자산시가× <u>120%</u>	… 순자산시가× <u>130%</u>
332	下 14	… (순자산시가) … × <u>120%</u>	… (순자산시가) … × <u>130%</u>
333	上 8	… 순자산시가*의 <u>120%</u> …	… 순자산시가*의 <u>130%</u> …
356	上 19	<u>11%</u> <u>15%</u>	<u>1%</u> <u>5%</u>
	上 22	<u>13%</u> <u>16%</u>	<u>3%</u> <u>6%</u>
403	上 6	(계획채무상환액 - 계획투자금액 ^㉔)	(계획채무상환액 + 계획투자금액 ^㉔)

II . 개정법령 등으로 인한 수정사항

1. 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」 개정으로 인한 수정사항

🕒 p.32 上 13행 아래. 다음 내용 추가

⑥ 재화·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계없이 지급받는 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

2.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(안)」 확정(2024.2.29.)에 따른 수정사항

(1)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명확화(문구 수정)

🔄 p.51 上 10~12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㉠ 개인이 물적시설* 없이 근로자를 고용**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

* '물적시설'이란 계속적·반복적으로 사업에 이용되는 건축물·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(임차한 것 포함)를 말한다.

**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.

(2)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추가(문구 수정)

🔄 p.73 下 3~1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'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'에는 ① 사업자의 부도·폐업 또는 공급 계약의 해제·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,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㉠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, ㉡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3.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기한 연장

🔄 p.146 上 15~16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* 2022.7.1.~2024.6.30.까지는 킬로그램 당 176.4원으로 한다.

4. 과점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조정

종전	개정
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)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<추 가>	<input type="checkbox"/> 특수관계인 중 친족 범위 조정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] (종전과 같음)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(認知)*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(生父)나 생모(生母) * '인지(認知)'란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.

<개정이유>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추가하였다.

<적용시기> 이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.

🔹 p.249 上 13~17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구분	특수관계인의 범위
(1) 친족관계	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)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·직계비속 ⑤ <u>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(認知)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(生父)나 생모(生母)</u>

5. 주택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액 계산방법을 「지방세법 시행령」에서 정함

🔹 p.272 下 6~3행. 아래 내용으로 교체

$$\begin{aligned} \text{과세표준상한액} = & \text{직전 연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(직전 연도의 시가표준액} \times \text{공정시장가액비율)} \\ & + \text{과세기준일 당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} \times \text{과세표준상한율(5\%)*} \end{aligned}$$

* 과세표준상한율 : 소비자물가지수, 주택가격변동률,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0%에서 5% 범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하는데, 현재 정해진 과세표준상한율은 5%이다.